

#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88
----------	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12월 21일  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위원회 제출 의안의 철회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, 연석회의 운영과 관련해 불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삭제하며, 그 밖의 일부 오류 사항과 부정확한 표현을 조항의 취지와 문맥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분명하고 쉬운 이해를 도모하려는 것임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18조의2).
-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의 철회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25조제3항).
- 연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삭제함(안 제58조).
- 그 밖의 일부 오류 사항과 부정확한 표현을 조항의 취지와 문맥에 맞게 수정함(안 제19조제1항 등).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,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
- 예산조치 : 원안과 같음.
- 기타사항 :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

#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8조의 제목“(의안의 발의·제출)”을“(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의안처리시스템(이하 “의안시스템”이라한다), 전자문서 또는”을 “전자문서 또는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심의를 거친 후 의장”을 “의장”으로 한다.

안 제19조제1항 본문 중 “인쇄하거나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알리고”를 “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거나 인쇄·배부하고”로 한다.

안 제19조의2제1항 중 “할 수 있다.”를 “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.

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.

제2항의 단서 중 “생략”을 “의장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생략”으로 한다.

안 제25조제3항 본문 중 “철회”를 “위원장이 철회”로, “얻어야”를 “얻어야 하며, 그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그 의안이”를 “위원장이 제안한 의안이”로, “되기 전에 위원회에서 회송을 요청하고,”를 “되지 아니하고”로, “발의된”을 “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의 회송을 요청할”로 한다.

안 제26조제1항 중 “갖추어 의안시스템 또는”을 “갖추어 전자문서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갖추어 의안시스템 또는”을 “갖추어 전자문서 또는”으로 한다.

안 제30조 중 “숫자”를 “숫자,”로 한다.

안 제36조의 제목 “(발언시간의 제한)”을 “(발언 원칙)”으로 한다.

안 제37조제1항 중 “1시간을 초과”를 “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”로 한다.

안 제46조제1항제4호 중 “출석의원과 청가의원”을 “출석의원”으로 한다.

안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법제84조제4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안 제54조제1항 본문 중 “취지설명”을 “취지 설명”으로 한다.

안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.

안 제61조제2항 중 “소관”을 “소속”으로 한다.

안 제62조제1항제3호 중 “출석위원과 청가위원의 성명과 수”를 “출석위원의 성명과 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공무원 또는”을 “공무원과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8조(의안의 제출 · 발의) ① 의회에 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시장·교육감·위 원회가 <u>제출·제안</u> <u>한다.</u>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의 안의 제출은 <u>전자</u> <u>문서와</u> 서면으로 한다.</p>	<p>제18조(의안의 발의 · 제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출한다.</u></p> <p>④ ----- ----- <u>의안</u> <u>처리시스템(이하</u> <u>“의안시스템”이라</u> <u>한다), 전자문서 또</u> <u>는</u> ----- -.</p>	<p>제18조(의안의 발의 <u>또는 제출</u>) ① ---- ----- ----- ----- <u>제출한다.</u></p> <p>④ ----- ----- <u>전자</u> <u>문서 또는</u> ----- -----.</p> <p>제18조의2(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심의) ① &lt;삭 제&gt;</p>
<p>제18조의2(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심의) ① 의장은 주민조 례발안법 제11조제 3항에 따라 <u>이의신</u> <u>청에 대한 심사 및</u> <u>결정을 하거나 같</u> <u>은 법 제12조제1항</u> <u>에 따라 주민조례</u></p>		

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「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주민발안 조례”라 한다)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심의를 거친 후 의장 명의로 발의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는 제19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은 주민발안조례에 따른다.

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① 의장은 의

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① -----

② 의장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① -----





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·주요 내용·전문(신·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)·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(이하 "입법예고"라 한다)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

제25조(의안·동의의 철회) ① 의원이 발

② -----  
5일 -----  
-----  
----- 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
제25조(의안·동의의 철회) ① -----

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·주요 내용·전문(신·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)·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(이하 "입법예고"라 한다)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.

② -----  
5일 -----  
-----  
----- . <단서 삭제>

제25조(의안·동의의 철회) ① (개정안과

의한 의안을 철회할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,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,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<신 설>

-----  
때에는 발의자 전원이-----  
- 때에는 동의한 의원이 -----  
한다. 다만,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시장 또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,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③ 제5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

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제5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위원장이 철회할 때에는 위

의를 얻어야 한다.  
다만, 그 의안이 본  
회의 의제가 되기  
전에 위원회에서  
회송을 요청하고,  
그 의안에 관한 번  
안동의가 해당 위  
원회에서 발의된  
경우에는 기존에  
제출한 의안은 철  
회된 것으로 본다.

원회의 동의를 얻  
어야 하며, 그 의  
안이 본회의 의제  
가 된 후에는 본회  
의 동의를 얻어  
야 한다. 다만, 위  
원장이 제안한 의  
안이 본회의 의제  
가 되지 아니하고  
그 의안에 관한 번  
안동의가 해당 위  
원회에서 발의되어  
해당 위원장이 이  
미 제출한 의안의  
회송을 요청할 경  
우에는 기존에 제  
출한 의안은 철회  
된 것으로 본다.

제26조(변안) ① 본회  
의에 있어서의 번  
안동의는 의안을  
발의한 의원의 3분  
의 2 이상의 동의  
로, 시장 또는 위원  
회가 제출한 의안

제26조(변안) ① 본회  
의에서-----  
----- 발  
의할 때의 발의 의  
원 및 찬성 의원 --  
-----  
----- 시장·교

제26조(변안) ① 본회  
의에서-----  
----- 발  
의할 때의 발의 의  
원 및 찬성 의원 --  
-----  
----- 시장·교



의결이 있는 후에 서로 저촉되는 조항, 문구,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36조(발언 시간의 제한) ①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.다만, 질의·보충발언·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~ ③ (생략)

<신설>

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, 문구, 숫자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-----  
-----  
-----.

제36조(발언 시간의 제한) -----  
-----  
-- 없다. 다만, 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의장은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를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.

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, 문구, 숫자,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-----  
-----  
-----.

제36조(발언 원칙)  
① (개정안과 같음)

② ~ ③ (개정안과 같음)

④ (개정안과 같음)



<p>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</u></p> <p>5. ~ 1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출석의원과 청가 의원</u>-----</p> <p>5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안과 같음)</p> <p>1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<u>출석의원</u>-----</p> <p>----</p>
<p>제49조(<u>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</u>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공개하지 아니</p>	<p>제49조(<u>회의록의 공개</u>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본회</u></p>	<p>제49조(<u>회의록의 공개</u>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<u>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본회</u></p>

한 회의의 내용은  
공표되어서는 아니  
된다. 다만, 본회의  
의 의결 또는 의장  
의 결정으로 제1항  
단서의 사유가 소  
멸되었다고 판단되  
는 경우에는 배부  
또는 공개되는 회  
의록에 게재할 수  
있다.

제54조(위원회의 심  
사) ① 위원회는 안  
건을 심사할 경우  
에는 먼저 제안자  
의 취지설명과 전  
문위원의 검토보고  
를 듣고 질의·답  
변·토론을 거쳐  
표결한다. 다만, 중  
요하다고 인정되는  
경우에는 의결로  
축조심사소위원회  
를 구성하여 축조  
심사를 할 수 있다.

의-----  
----- 아니된  
다. 다만, -----  
-----  
----- 법 제84조  
제4항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54조(위원회의 심  
사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취지 설명과 -----  
-----  
----- 질의·답변과  
토론----- 표결  
하며, 제안자의 취  
지 설명은 제안자가  
위원장과 협의하여  
서면으로 할 수 있  
다. 다만, 중요하다  
고 인정하는 경우

의-----  
----- 아니된  
다. 다만, -----  
-----  
----- 제1항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54조(위원회의 심  
사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취지 설명과 -----  
-----  
----- 질의·답변과  
토론----- 표결  
하며, 제안자의 취  
지 설명은 제안자  
가 위원장과 협의  
하여 서면으로 할  
수 있다. 다만, 중요  
하다고 인정하는



② 토론은 질의 종  
결후에 하며 토론  
의 방법은 제27조  
를 준용한다.

③ 위원회는 심의  
하는 안건이 예산  
상의 조치를 수반  
하는 경우와 중요  
하다고 인정되는  
조례안에 대하여는  
시장의 의견을 들  
어야 한다.

④ 제1항의 규정에  
따른 전문위원의  
검토보고서는 특별  
한 사정이 없으면  
해당 안건의 위원  
회 상정일 3일 전까

에는 의결로 축조  
심사소위원회를 구  
성하여 축조심사를  
할 수 있다.

② 토론은 질의 종  
결 후에 하며, 토론  
의 방법은 제27조  
를 준용한다. 이 경  
우 “본회의”는 “위  
원회”로, “의장”은  
“위원장”으로 본다.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시장 또는  
교육감-----.

④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소

경우에는 의결로  
축조심사소위원회  
를 구성하여 축조  
심사를 할 수 있다.

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(개정안과 같음)

④ (개정안과 같음)

지 소속위원회에게 배부하고, 시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

⑤ 위원회는 제정 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의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,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.

⑥ 제5항의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의 발의의원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5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.

제58조(연석회의) ①

속 위원에게 -----  
--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-----  
-----.

⑤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 위원회의의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⑥ -----  
----- 전부개정조례안의 발의의원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58조(연석회의) ①

⑤ (개정안과 같음)

⑥ (개정안과 같음)

제58조(연석회의) ①

· ② (생략)

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.

<신설>
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회의로 하고,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재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2조와 43조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
④ 연석회의의 의사정족수는 관련 위원회의 출석위원수에 상관없이 소관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 그러나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1명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유회된 것으로 본다.

· 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.

④ <삭제>

<신 설>

<신 설>

제61조(위원장의 보고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은 다른

⑤ 연석회의의 회의차수는 소관 위원회의 회의차수에만 산입한다.

⑥ 연석회의에서는 심사대상 안건에 관한 질의와 의견 교환만 할 수 있으며, 토론과 표결은 할 수 없다. 다만, 연석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결정은 할 수 있으며, 소관 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, 참고인의 의견청취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비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.

제61조(위원장의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소관 위

⑤ <삭 제>

⑥ <삭 제>

제61조(위원장의 보고) ① (개정안과 같음)

② ----- 소속 위

위원에게 제1항의  
보고 또는 보충보  
고를 하게 할 수 있  
다.

③ 위원장이 제1항  
의 보고를 하는 경  
우에는 자기의 의  
견을 가할 수 없다.

제62조(위원회 회의  
록) ① 위원회는 위  
원회 회의록을 작  
성하고 다음 사항  
을 기재한다.

1.·2. (생략)

3. 출석위원의 성명

4. 출석한 위원 아  
닌 의원의 성명

5. 출석한 공무원·  
진술인의 성명

6. ~ 10. (생략)

원회의 다른 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제1항에  
따라 보고할 때에  
는 -----  
- 덧붙일 -----.

제62조(위원회 회의  
록) ① -----  
-----  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  
음)

3. 출석위원과 청가  
위원의 성명과 수

4. 위원이 아닌 출  
석의원의 성명과  
수

5. 출석한 공무원  
또는 진술인의 성  
명

6. ~ 10. (현행과  
같음)

원회의 다른 -----  
-----  
-----.

③ (개정안과 같음)

제62조(위원회 회의  
록) ① -----  
-----  
-----.

1.·2. (개정안과 같  
음)

3. 출석위원의 성  
명과 수

4. (개정안과 같음)

5. 출석한 공무원  
과 진술인의 성명

6. ~ 10. (개정안과  
같음)

<p>11. 그 <u>밖의 위원회</u>의 <u>의결</u>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② <u>위원회에서의</u>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<u>기록한다.다만,</u>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.<u>이 경우에는</u>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<u>발언취지</u>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.</p> <p>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<u>대리한부</u> 위원장이서명한다.</p>	<p>11. 그 <u>밖에 위원회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<u>위원회에서 한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기록</u></p> <p><u>한다. 다만,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있으며, 이 경우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발언 취지</u>를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대리한 부위</u></p> <p><u>원장이 서명한다.</u></p>	<p>1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---	---	--

##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 호

###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”로 한다.

제11조 전단 중 “본회의는 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 회의(이하 “본회의”라 한다)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로, “서울특별시의회 의장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 의장”으로, “개의시를”을 “개의 시각을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회의”를 “본회의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기산한다”를 “계산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회의”를 “본회의”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회의에 관한 선포)”를 “(본회의에 관한 선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”을 “시각부터 1시간이 지날”로, “미달될 경우에는”을 “미치지 못할 때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회의 중”을 “본회의 중”으로, “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”를 “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”로 한다.

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14조의2) 제1항 단서 중 “의장 또는”을 “의장이나”로, “1/5인”을 “5분의 1”로, “찬성하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”를 “찬성하거나, 의장이 각”으로 하며,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산회)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.

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본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. 다만, 천재·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써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개의회시간”을 “개의회 시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회의의 일시만을 의원”을 “본회의의 개의 일시만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“(의사일정의 미료안건)”을“(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회의를 열지”를 “본회의를 열지”로, “회의를 마치지”를 “마치지”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“(의안의 제출·발의)”를“(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출·제안한다.”를 “제출한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발의의원과 찬성의원”을 “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”으로, “발의의원의”를 “발의 의원의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발의의원이”를 “발의 의원이”로, “대표발의의원”을 “대표발의 의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15일전까지”를 “15일 전까지”로, “한다.다만,”을 “한다. 다만,”



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전자문서와”를 “전자문서 또는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심의를 거친 후 의장”을 “의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본문 중 “제출된 경우에는”을 “제출되었을 때에는”으로, “전송하고 인쇄하여 배부하고, 본회의에 보고하며”를 “전송하거나 인쇄·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,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중에는 본회의”를 “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의회홈페이지”를 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”로 한다.

제19조의2의 제목 “(조례안 예고)”를 “(입법예고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할 수 있다.”를 “한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”을 “5일”로 한다.

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.

제19조의2제3항 전단 중 “관해 동”을 “대하여 이”로, “사항에 대해서는”을 “사항은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 중 “교섭단체대표의원”을 각각 “대표의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간내에”를 “기간 내에”로 한다.

제21조의2제1항 전단 중 ““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””를 ““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””로, “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”을 “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신속처리안건지정동

의”를 각각 “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”을 “제3항”으로, “아니한”을 “아니하였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교섭단체대표의원”을 “대표의원”으로 한다.

제22조의 제목 “(위원회의 제안)”을 “(위원회의 제출 의안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의한”을 “제출한”으로 한다.

제23조 중 “동의자외”를 “동의자 외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의원 13명 이상의 찬성자가”를 “13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그 위원회”를 “그 대안을 그 위원회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경우에는 발의자 전원”을 “때에는 발의자 전원이”로, “경우에는 동의한 자가”를 “때에는 동의한 의원이”로, “한다.다만,”을 “한다. 다만,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”을 “시장 또는 교육감”으로, “경우에는 본회의 또는”을 “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,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”으로, “받아야”를 “얻어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5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위원장이 철회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그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제안한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동의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의 회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.

제26조제1항 중 “본회의에 있어서의”를 “본회의에서”로, “발의한 의원의”를 “발의할 때의 발의 의원 및 찬성 의원”으로, “시장”을 “시장·교육감”으로, “갖추어”를 “갖추어 전자문서 또는”으로, “의결한다.그러나”를 “의결한다. 다만,”으로, “시장”을 “시장 또는 교육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”을 “위원회에서 번안동의는 위원회”로, “갖추어”를 “갖추어 전자문서 또는”으로, “의결한다. 그러나 본회의에”를 “의결한다. 다만, 본회의에서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질의토론”을 “질의·토론”으로, “안건에 대하여는”을 “안건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공하고, 필요에 따라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.”를 “제공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필요에 따라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.

제28조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동의의제에 대하여 수개”를 “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최후로”를 “가장 늦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수개가”를 “여러 건이”로 한다.

제30조 중 “의결이 있는 후에 서로 저촉되는”을 “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”으로, “숫자”를 “숫자,”로, “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”을 “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2항,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, 제4항 및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”을 “발언 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

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발언은 발언요지”를 “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발언통지”를 “발언 통지”로 한다.

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의원의 발언은 발언하는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.
- ② 의원이 산회 또는 본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가 시작되면 의장은 그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.

제34조의 제목 “(의제외 발언의 금지)”를 “(의제 외 발언의 금지)”로 한다.

제35조의 제목 “(발언회수의 제한)”을 “(발언 횟수의 제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2회에 한하여”를 “2회를 초과하여”로, “있다.다만,”을 “없다. 다만,”으로 한다.

제36조의 제목 “(발언시간의 제한)”을 “(발언 원칙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의 “없다.다만,”을 “없다. 다만,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의장은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를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.
- 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37조의 제목 “(5분자유발언)”을 “(5분 자유발언)”으로 하고, 같은 조

제1항 중 “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”을 “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,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”으로, ““5분자유발언””을 ““5분자유발언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5분자유발언”을 “5분 자유발언”으로, “1시간”을 “4시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의원수”를 “의장은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”로, “의장이”를 “5분 자유발언의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를”로 한다.

제3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에도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정한다.

제37조제4항 전단 중 “5분자유발언”을 “5분 자유발언”으로 한다.

제37조의2 중 “소수의견자가”를 “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이”로 한다.

제38조의 제목 “(의장의 토론참가)”를 “(의장의 토론 참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때에는”으로, “하며”를 “하며,”로, “의장석에 들어갈”을 “의장석으로 돌아갈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해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39조제2항 중 “있은후”을 “있은 후”으로, “있다.다만,”을 “있다. 다만,”으로 한다.

제41조 중 “없다.그러나”를 “없다. 다만,”으로 한다.

제42조 중 “표결에 있어서”를 “표결에서”으로 한다.

제43조제3항 본문 중 “안건에 대한”을 “의사진행에 관한 결정 등 간단하

고 경미한 안전에 대해”로 하고, 같은 항 본문의 후단을 삭제한다.

제44조의 제목“(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)”를“(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절차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투표할 경우에는”을 “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를 실시할 때에는”으로, “투입한다”를 “넣는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투표할 경우에는”을 “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를 실시할 때에는”으로, “몇몇”을 “몇 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한다.다만,”을 “한다. 다만,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 모두”를 “의원 모두”로 한다.

제45조의 제목“(표결결과선포)”를“(표결 결과 선포)”로 한다.

제47조제1항 중 “매회기”를 “매 회기”로, “서명한다.다만,”을 “서명한다. 다만,”으로 한다.

제48조제1항 중 “있다.그러나”를 “있다. 다만,”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,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이나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적는다.

제49조의 제목“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”를“(회의록의 공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회의”를 “본회의”로, “아니된다.다만,”을 “아니된다. 다만,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일반에게”를 “일반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밖의”를 “밖에”로 한다.

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49조2제3항 중 “본회의 및”을 “본회의나”로 한다.

제49조3제1항 전단 중 “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”을 “제49조의2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51조의 제목 중 “(본회의중 위원회의 개회)”를 “(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)”로 한다.

제52조 중 “동의자외”를 “동의자 외”로 한다.

제53조의 제목 “(위원회의 제안)”을 “(위원회의 의안 제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출자”를 “제안자”로 한다.

제54조제1항 본문 중 “취지설명”을 “취지 설명”으로, “질의·답변·토론을 거쳐 표결한다”를 “질의·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하며, 제안자의 취지 설명은 제안자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인정되는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종결후에 하며”를 “종결 후에 하며,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“본회의”는 “위원회”로, “의장”은 “위원장”으로 본다.

제54조제3항 중 “시장”을 “시장 또는 교육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소속위원에게 배부하고, 시의회홈페이지”를 “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,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“위원회의의결”을 “위원회의 의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발의의원”을 “발의 의원”으로 한다.

제55조제1항 중 “회수”를 “횡수”로 한다.

제59조제1항 중 “안건 또는”를 “안건이나”로 한다.

제60조제2항 중 “제1항의 보고서에는 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, “경우에는”을 “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”로, “기재하여야”를 “적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있다.다만,”을 “있다. 다만,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경우에는이”를 “경우에는 이”로 한다.

제61조제2항 중 “다른”을 “소속 위원회의 다른”으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”을 “제1항에 따라 보고할 때에는”으로, “가할”을 “덧붙일”로 한다.

제62조제1항제3호 중 “성명”을 “성명과 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공무원·진술인”을 “공무원과 진술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 중 “밖의 위원회의 의결”을 “밖에 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회에서의”를 “위원회에서 한”으로, “기록한다.다만,”을 “기록한다. 다만,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있다.이 경우에는”을 “있으며, 이 경우”로, “발언취지”를 “발언 취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대리한부위원장이서명한다”를 “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”로 한다.

#### 4.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

제63조의 제목 “(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)”를 “(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한다.다만,”을 “한다. 다만,”으로 한다.



제65조제1항 중 “소관별 상임위원회에”를 “소관 상임위원회에”로, “소관별 상임위원회는”을 “소관 상임위원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이하“예결위원회””를 “이하 “예결위원회”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소관별 상임위원회에”를 “소관 상임위원회에”로, “소관별 상임위원회가”를 “소관 상임위원회가”로, “기간내에”를 “기간 내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하며,소관”을 “하며, 소관”으로 한다.

제68조 중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 한다.

제69조제1항 중 “소관별 상임위원회에”를 “소관 상임위원회에”로, “소관별 상임위원회는”을 “소관 상임위원회는”으로 한다.

제84조제1항 본문 중 “한다)제14조제1항”을 “한다) 제14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보고한다”를 “보고하고,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의원이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60조제1항제7호”를 “의원이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60조제1항제7호”로 한다.

제86조 중 “아니한다.다만,”을 “아니한다. 다만,”으로 한다.

제87조제1항 중 “관계의원”를 “관계 의원”으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없다. 다만,”을 “없다. 다만,”으로 한다.

제94조의 제목 “(규정등 제정)”을 “(규정 등 제정)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-----		
제11조(개회)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(이하 “대표의원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 그 개회시를 정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.		제11조(개회) 서울특별시의회회의(이하 “본회의”라 한다)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--- 서울특별시의회의회장-----		
제12조(휴회) ① (생략) ② 휴회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,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한다.		제12조(휴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----- --- 본회의-----.		

제13조(회기) ① (생략)

②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.

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.

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생략)

②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

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.

④ (생략)

<신설>

제13조(회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계산한다.

③ 본회의-----  
-----  
-----.

제14조(본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시각부터 1시간이 지날 -----  
-----  
-----  
미치지 못할 때에는 -----  
-----.

③ 본회의 중 -----  
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4조의2(산회) ① 의사일정에

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.

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본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. 다만, 천재·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

제14조의2(회의의 공개) ①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재적의원 1/5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5조(의사일정)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.

② (생략)

③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

나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써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4조의3(회의의 공개) ① -----  
-----.  
--- 의장이나 -----  
----- 5분의 1 -----  
----- 찬성하거나, 의장이  
각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의사일정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개의시  
각 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본회의의 개의 일시만

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.

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송부한다.

제17조(의사일정의 미료안건)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.

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시장·교육감·위원회가 제출·제안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,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

을 서울특별시회의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-----

④ -----  
----- 지체 없이 -----

제17조(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) -----  
----- 본회의를 열지 -----  
마치지 -----

제18조(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) ① -----  
----- 제출한다.

② ----- 발의 의원과  
찬성 의원-----  
----- 발의 의원  
의 -----  
----- 발의 의원이 -----  
----- 대표발의 의원 -----

③ -----  
----- 15일 전까지 -----

한다.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  
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 
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.

⑤ (생략)

제18조의2(주민조례청구에 관한  
심의)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  
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  
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을 하거  
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 
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 
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「서  
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 
관한 조례」(이하 “주민발안 조  
례”라 한다)에 따른 주민조례청  
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 
한다.

② 제1항의 심의를 거친 후 의  
장 명의로 발의된 주민청구조례  
안의 심사절차는 제19조부터 제  
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  
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은  
주민발안 조례에 따른다.

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① 의장  
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

한다. 다만, -----  
-----.

④ -----  
전자문서 또는 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8조의2(주민조례청구에 관한  
심의) ① <삭제>

② 의장 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① ----  
----- 제출되었을



③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.

제21조(심사기간)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3.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는 경우

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21조의2(안건의 신속처리) ①

③ ----- 대하여 이 -----  
----- 사항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21조(심사기간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 대표의원 -----  
-----

② -----  
----- 기간 내에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21조의2(안건의 신속처리) ---



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(이하 이 조에서 “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”라 한다)를 의장에게,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(이하 “신속처리대상

----- “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”-----

-----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-----

-----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-----

② -----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-----

안건”이라 한다)에 대한 대안(代案)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.

③ (생략)

④ 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.

⑤·⑥ (생략)

⑦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22조(위원회의 제안) 위원회에서 제의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23조(동회의 의제 성립)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회는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.

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제3항 -----  
-----  
----- 아니하였을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 대표의원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22조(위원회의 제출 의안) -----  
-- 제출한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23조(동회의 의제 성립)-----  
-----  
----- 동의자 외 -----  
-----.

제24조(수정동의)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수정동의안과 그 이유를 붙여 의원 13명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.

제25조(의안·동의의 철회)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할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,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동의를 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,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<신 설>

제24조(수정동의) -----  
-----  
----- 13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 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그 대안을 그 위원회-----.

제25조(의안·동의의 철회) ① -----  
----- 때  
----- 에는 발의자 전원-----  
----- 때에는 동의를 한 의원이 -----  
----- 한다. 다만,-----  
-----.

② 시장 또는 교육감-----  
-----  
----- 때에  
----- 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  
----- 는 본회의의, 위원회에서 의제가  
----- 된 후에는 ----- 언어야 -----.

③ 제5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위원장이 철회할

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그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제안한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 동의를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의 회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.

제26조(번안) ①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를 의안을 발의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,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그러나 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.

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,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

제26조(번안) ① 본회의에서----- 발의할 때의 발의 의원 및 찬성 의원 ----- 시장·교육감 ----- 갖추어 전자문서 또는 ----- 의결한다. 다만, ----- 시장 또는 교육감-----.

②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는 위원 회 ----- 갖추어 전자문서 또는 -----

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
다.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 
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.

제27조(안건심의) ① 본회의에서  
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그 안  
건을 심사한 위원장 또는 의원  
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 
거쳐 표결한다. 다만, 위원회의  
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 
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 
하고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  
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질의·토  
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질  
의·토론을 생략한다.

② ~ ④ (생략)

⑤ 본회의의 안건 심의자료는  
전자회의 단말기를 통하여 제공  
하고, 필요에 따라 인쇄하여 배  
부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제28조(재회부) 본회의는 위원장  
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필요  
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로  
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  
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 
수 있다.

제29조(수정안의 표결순서) ① 동

----- 의결한다.  
다만, 본회의에서 -----  
-----.

제27조(안건심의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질의·토론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안  
건은 -----  
-----  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 
----- 제공  
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인쇄하  
여 배부할 수 있다.

제28조(재회부) -----  
-----  
----- 때에는 -----  
-----  
-----.

제29조(수정안의 표결순서) ① 같

의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  
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다  
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  
를 정한다.

1.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 
먼저 표결한다.

2. (생략)

3.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가 있  
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  
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.

② (생략)

제30조(의안의 정리) 본회의는 의  
안의 의결이 있는 후에 서로 저  
촉되는 조항, 문구, 숫자 그 밖  
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 
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  
할 수 있다.

제31조(발언의 허가) ① (생략)

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  
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  
난 다음,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  
언할 수 있다.

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  
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  
여야 하며, 의장은 의제와 직접

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-----

-----  
-----  
-----.

1. 가장 늦게 -----  
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여러 건이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의안의 정리) -----  
---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-  
----- 숫자, -----  
--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 
때에는 -----  
-----.

제31조(발언의 허가) ① (현행과  
같음)

③ 발언 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  
은 통지를 한 -----  
-----  
-----.

④ ----- 발언을 하려  
면 발언 요지-----  
-----

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발언통지는 전 자회의 단말기 또는 서면으로 하되,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.

제33조(발언의 계속)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,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.

<신 설>

제34조(의제외 발언의 금지) ① (생략)

제35조(발언회수의 제한)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.다만,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, 발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발언 통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33조(발언의 계속) ① 의원의 발언은 발언하는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.

② 의원이 산회 또는 본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가 시작되면 의장은 그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.

제34조(의제 외 발언의 금지) ①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발언 횟수의 제한) -----  
----- 2회를 초과하여 -----  
----- 없다. 다만, -----  
-----





있다.

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그 발언의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. <후단 신설>

④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37조의2(보충보고)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

----

② 5분 자유발언-----  
----- 4시간 -----

--.

③ 의장은 교섭단체별 소속의원 수-----  
----- 5분 자유발언의 발언의원 수와 발언순서를 -----

--.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에도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④ -----  
5분 자유발언-----  
-----  
-----

--.

제37조의2(보충보고) -----  
----- 소수의견을 가진 의원이 -----

하기 위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 
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 
할 수 있다

제38조(의장의 토론참가) ① 의장  
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에는 의  
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  
건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  
석에 들어갈 수 없다.

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  
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부의장이  
의장을 대리한다.

제39조(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)

① (생략)

② 의장은 발언을 희망하는 의  
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이라도  
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후  
에는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  
결을 선포할 수 있다.다만, 질의  
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  
결을 동의할 수 없다.

③ (생략)

제41조(표결의 참가) 표결할 경우  
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  
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.그  
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경  
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

-----  
-----  
-----.

제38조(의장의 토론 참가) -----  
----- 때에는 --  
----- 하며, -----  
----- 의장  
석으로 돌아갈 ---.

② ----- 따라 -----  
-----  
-----.

제39조(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있은 후  
-----  
----- 있다. 다만, 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1조(표결의 참가) -----  
-----  
----- 없다. 다  
만, -----  
-----

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

제42조(의사변경의 금지)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.

제43조(표결방법) ①·② (생략)

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

제44조(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)

① 투표할 경우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.

② 투표할 경우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몇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, 그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사무처 직원에게 투개표 상황을 점검·계산하게 한다.

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

-----.

제42조(의사변경의 금지) -----

표결에서 -----

-----.

제43조(표결방법) ①·② (현행과

같음)

③ ----- 의사진행에 관한 결정 등 간단하고 경미한 안건에 대해 -----

----- . <후단 삭제> -----

-----

-----

-----.

제44조(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절차)

①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-----

-----

넣는다.

②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-----

----- 몇 명 -----

-----

-----.

③ -----

많은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.  
다만,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감표위원은 다른 위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.

제45조(표결결과선포)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.

제47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① 회의록에는 의장·의장을 대리한 부의장·임시의장과 의회에서 매회기마다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한다.다만,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.

② (생략)

제48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)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.

② (생략)

----- 한다.

다만, -----

-----

-----.

④ ----- 의원 모두 -----.

제45조(표결 결과 선포) -----

-----

-----.

제47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①

-----

-----

-- 매 회기 -----

----- 서명한

다. 다만,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

정) ① 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 있다. 다

만,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49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

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 
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  
개한다. <단서 신설>

② ~ ③ (생략)

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  
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.다  
만,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 
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 
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 
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  
에 게재할 수 있다.

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 
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 
있다.

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·  
절차·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 
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삭  
제할 수 없으며, 발언을 통하여  
자구 정정이나 취소의 발언을  
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  
에 적는다.

제49조(회의록의 공개) ①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 
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  
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 
아니한다.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본회의-----  
----- 아니된다. 다  
만,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.

⑤ -----  
일반에 -----  
----- .

⑥ -----  
----- 밖에 -----  
----- .

제49조의2(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) ①·② (생략)

③ 의장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의 실시범위·방법·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9조의3(영상자료의 제공) ① 의장은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,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·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51조(본회의중 위원회의 개최) (생략)

제52조(위원회에서 동의)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.

제53조(위원회의 제안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

제49조의2(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본회의나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49조의3(영상자료의 제공) ① -----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1조(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최) (현행과 같음)

제52조(위원회에서 동의) -----  
----- 동의자 외 -----  
-----.

제53조(위원회의 의안 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제

출자가 된다.

제54조(위원회의 심사)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·답변·토론을 거쳐 표결한다. 다만,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축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.

② 토론은 질의 종결후에 하며 토론의 방법은 제27조를 준용한다. <후단 신설>

③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3일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하고, 시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

안자-----.

제54조(위원회의 심사) -----  
-----  
----- 취지 설명과 -----  
----- 질의·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하며, 제안자의 취지 설명은 제안자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. --- 인정하는 -----  
-----.

② 토론은 질의 종결 후에 하며, 토론의 방법은 제27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본회의”는 “위원회”로, “의장”은 “위원장”으로 본다.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시장 또는 교육감 -----  
-----.

④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,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-----

다.

⑤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의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,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.

⑥ 제5항의 제정조례안 또는 전 부개정조례안의 발의의원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5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.

제55조(위원의 발언)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. 다만,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(생략)

제59조(공청회)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·경험이 있는 사람 등(이하 “진술인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의견을 들을

--.

⑤ -----  
-----  
----- . ----- 위  
원회의 의결-----  
-----  
----- .

⑥ -----  
----- 발의의원-----  
-----  
----- .

제55조(위원의 발언) ① -----  
-----  
회수 -----  
----- . -----  
----- 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9조(공청회) ① -----  
-- 안건이나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

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제60조(심사보고서의 제출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공하고,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61조(위원장의 보고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.

제62조(위원회 회의록)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.

1. 2. (생략)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60조(심사보고서의 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-----  
-----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-----  
----- 적어야 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--- 있다. 다만, ----- 경우에는 이를 -----.

제61조(위원장의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소속 위원회의 다른 -----  
-----.

③ ----- 제1항에 따라 보고할 때에는 ----- 덧붙일 -----.

제62조(위원회 회의록) ① 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출석위원의 성명

4.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

5. 출석한 공무원·진술인의 성명

6. ~ 10. (생략)

11. 그 밖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.다만,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.이 경우에는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.

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부위원장이 서명한다.

제63조(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)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과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, 감사 또는 조사

3. ----- 성명과 수

4.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

5. ----- 공무원과 진술인-----  
--

6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-- 밖에 위원회 -----  
-----  
---

② 위원회에서 한 -----  
-----  
----- 기록한다. 다만,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있으며, 이 -----  
경우 -----  
발언 취지를 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.

제63조(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  
여야 한다.다만, 의회 밖으로는  
대출하지 못한다.

제65조(예산안 심의) ① 의회에  
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  
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  
고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  
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소관  
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  
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 
다.

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  
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  
회(이하“예결위원회”라 한다)에  
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  
회의에 부의한다.

③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  
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 
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  
며, 소관별 상임위원회가 이유  
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  
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 
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.

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  
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  
야 하며,소관 상임위원회에서

-----  
--- 한다. 다만, -----  
-----.

제65조(예산안 심의) ① -----  
-----  
-- 소관 상임위원회에 -----  
-----  
----- 소관  
상임위원회는 -----  
-----  
--.

② -----  
-----  
--(이하 “예결위원회”-----)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소관  
상임위원회에 -----  
-----  
-- 소관 상임위원회가 -----  
-----기간 내에-----  
-----.

④ -----  
-----  
-- 하며, 소관 -----

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.

제68조(예산안의 재심요구)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68조(예산안의 재심요구) -----  
-----  
-----  
한정하여 -----  
-----.

제69조(결산의 심사)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제69조(결산의 심사) ① -----  
-----  
소관 상임위원회에-----  
소관 상임위원회는-----  
-----.

②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4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의장은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」(이하 “윤리강령 조례”라 한다)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(이하 “윤리심사대상자”라 한다)또는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(이하 “징계대상자”라 한다)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 다만, 윤리강

제84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한다) 제14조제1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령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고를 2회 받은 의원은 징계대상자가 된다.

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.이 경우에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③ ~ ⑥ (생략)

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60조제1항제7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.

제86조(의사의 비공개)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다만,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87조(심문 및 변명)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

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 
-----

보고하고,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 <후단 삭제>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  
----- 의원이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60조제1항제7호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86조(의사의 비공개) -----  
-----  
- 아니한다. 다만, -----  
-----  
-----.

제87조(심문 및 변명) ① -----  
-----  
----- 관  
계 의원-----

수 있다.

② 피심위원은 자기의 윤리심사  
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 
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.  
다만,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 
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  
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  
다.

제94조(규정등 제정) (생략)

-----.

② -----  
-----  
----- 없다.

다만,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94조(규정 등 제정) (현행과 같  
음)